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5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4
나.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입법배경	7
다.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2
2. 조문별 검토	15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5
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계획(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21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25
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34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39
바. 보칙(안 제28조 및 29조)	48
사. 벌칙(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49
아. 부칙	5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현의원 등 3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7.
3. 회부연월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

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읍·면·동 또는 통·리 등 지역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민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마을공동체는 주민 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성·독립성·책임성을 갖추어 모든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라.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 전담부서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지원사업, 전문인력,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으로 하여, 본칙 7장 총 32개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7조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제8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제10조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제11조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13조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제14조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지원	제15조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제16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17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 문		규정사항
제5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19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0조	마을공동체기금
	제21조	기금의 용도
	제22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4조	민간기금의 조성
	제25조	마을공동체재단
	제26조	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재산 활용 등
	제27조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제6장 보칙	제28조	자료제출 요구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벌칙
	제32조	과태료
부칙	시행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마을공동체”를 주민등이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는 등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자발성”, “개방성”, “공익성”, “민주성”, “상호협력” 등을 규정하며(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재원 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②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군·구 또는 시·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며(안 제10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③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두고(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행정안전부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마을공동체는 민간기금 및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24조·제25조), 마을공동체에 국유·공유재산의 특례를 둘 수 있음(안 제26조).

④ 이 외에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안 제30조), 의무 위반시 처벌에 관한 규정(안 제31조·제32조)을 두고 있으며,

⑤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나.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입법배경

마을공동체는 아직 법률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못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으며,¹⁾

기존 학계의 논의를 종합하면 ‘마을’을 단위로 사회적·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²⁾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로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도시는 과밀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협동과 상호호혜 등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체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참고2] 시·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정의규정 참조.

2)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지역공동체의 현황 진단연구」(2020)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로 ① 지역성(locality), ② 상호작용(Interaction), ③ 공동의 유대(Common Bonds), ④ 공익성(Public Interests)을 제시함.

<2025년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사업>

부처명	사업명	부처명	사업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우리동네살리기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새뜰마을
	주민자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청년마을		문화로 사회연대
	새마을운동지원		관광두레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돌봄마을 조성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농촌신활력플러스		통합돌봄
	농촌경제활성화지원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농촌중심지활성화		어촌체험휴양마을조성
	기초생활거점조성		어울림마을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농촌 사회적경제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농촌 교육문화여건 개선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

※ 한국정책학회, 「지역공동체의 현황진단연구」(2020)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는 마을공동체의 형태나 활동내용, 활동지역, 구성원 등에 따른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업의 일관성·지속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제정안은 마을공동체의 지원체계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18대 ~ 제21대 국회에서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의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 바 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농촌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법안³⁾은 제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

국회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제18대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문학진의원	1812917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제19대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노웅래의원	1901463	임기만료 폐기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윤석의원	1906506	임기만료 폐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법안	윤재옥의원	1908166	임기만료 폐기	안전행정위원회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우윤근의원	1909967	임기만료 폐기	안전행정위원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청원의원	1917715	임기만료 폐기	안전행정위원회
제20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유민봉의원	2003720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홍문표의원	2004408	임기만료 폐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노웅래의원	2004678	임기만료 폐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2005796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088)

국 회	법 률 안 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2018876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박정의원	2020453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제 21 대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박정의원	2100059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2103568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이해식의원	2104140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2104792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2107496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2113133	임기만료 폐기	교육위원회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의원	2113383	임기만료 폐기	행정안전위원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2114088	수정가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	2125885	임기만료 폐기	국토교통위원회
제 22 대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2200039	소위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	2200094	소위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2200893	전체회의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한병도의원	2201473	소위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지원법안	이성권의원	2204369	소위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동만의원	2204503	소위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신정훈의원	2204911	소위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국 회	법 률 안 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소관위원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의원	2205410	소위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2207716	전체회의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2210679	전체회의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⁴⁾ 및 관련된 내용으로 마을기업에 관한 법률안 7건⁵⁾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93)

5)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39),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93), 마을기업지원법안(이성권의원 대표발의, 220436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2204503),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2049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220541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2210679)

다.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21대 국회에서 1번의 공청회⁶⁾와 1번의 법안소위⁷⁾를 통해 다음의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제21대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요지 >

쟁점	찬 성	반 대
법 제정 필요성	○사업간의 중복, 지자체 재정지원의 한계, 지역 간 불균형 등 보완 [입법공청회('21.08.30.)]	○마을 단위의 자율성·자치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추진 [입법공청회('21.08.30.)]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의 제도 하에서 정책 추진 가능하므로 법률 제정의 실익 부족 [법안소위('22.02.07.)]
다른 법안과 통합 및 연계	○내용의 중첩 방지 및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법안, 마을기업법 및 다른 부처 법률(안)과 통합·조정 필요 - 통합방안 : 하나의 법률 내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지역사회혁신 사업 등 나열 - 연계방안 : 기본법 - 개별법의 형태 [입법공청회('21.08.30.)]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혁신과의 연계성 부족하므로 별도 추진 [법안소위('22.02.07.)]
계획 수립	○지역발전계획, 도시계획 등 기존 계획과 차이 [법안소위('22.02.07.)]	○행정부담 증가 우려 [법안소위('22.02.07.)]
그 외 논의 사항	○선거운동 외의 정치행위를 함께 금지해야 할 필요 [법안소위('22.02.07.)]	○정당활동 금지 부분 삭제 필요 [법안소위('22.02.07.)]

6) 제21대국회 제390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08.30.)

7) 제21대국회 제393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02.07.)

첫째,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역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을공동체의 한 유형인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기업에 관한 법률안」 등과의 유사성·차이성을 고려하여 통합 제정 및 법안 간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정안이 규정하는 ‘공동체’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⁸⁾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⁹⁾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역 내의 주민들로 구성하여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¹⁰⁾¹¹⁾와 마을공동체 간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

8)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43)

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62)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지역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복지사업, 교육·돌봄, 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마을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내용 및 체계가 유사하여 법안 간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안 제1조), “주민등”,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안 제2조), 기본 원칙(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선거운동의 금지(안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이란 읍·면·동 또는 통·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등이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등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체는 이 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의 주도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
2. 모든 주민등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다양성·독립성·책임성을 갖출 것
3. 모든 주민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닐 것
4.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
5. 다른 마을공동체 및 유관 행정기관 등과 상호협력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며,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운동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과 그에 소속된 구성원은 그 단체 또는 기관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2조) “주민등”의 요건으로 ① 읍·면·동 또는 통·리 등 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②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동성이 증가한 현대사회의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인구)하거

나 체류(체류인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¹²⁾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주민·외국인등록자료나 직업 정보, 통신 모바일자료, 카드 사용 정보 등 민관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¹³⁾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의 주민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과 주민등이 특정 지역의 생활인구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마을공동체”란 주민등이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13) 관계부처 합동(행정안전부, 통계청), 「'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2025.03.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등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조직 형태와 활동을 포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 내용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제정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3조)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으로서 ① 참여, ② 개방성과 다양성·독립성·책임성, ③ 공익성, ④ 민주성, ⑤ 상호협력 등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간의 연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마을공동체와 협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무 및 지원 등을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삭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조) 제정안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나 기관이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공동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마을공동체와 지역지원기관 등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고도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지,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연협, 동호인회,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명의로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¹⁴⁾ 개별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¹⁵⁾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¹⁶⁾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고,

14)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지행위)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안 제6조)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계획(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제 정 안
제7조(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규정, 정관 등으로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방안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제 정 안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④ 시·군·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마을공동체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도계획은 시·군·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10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시·군·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지역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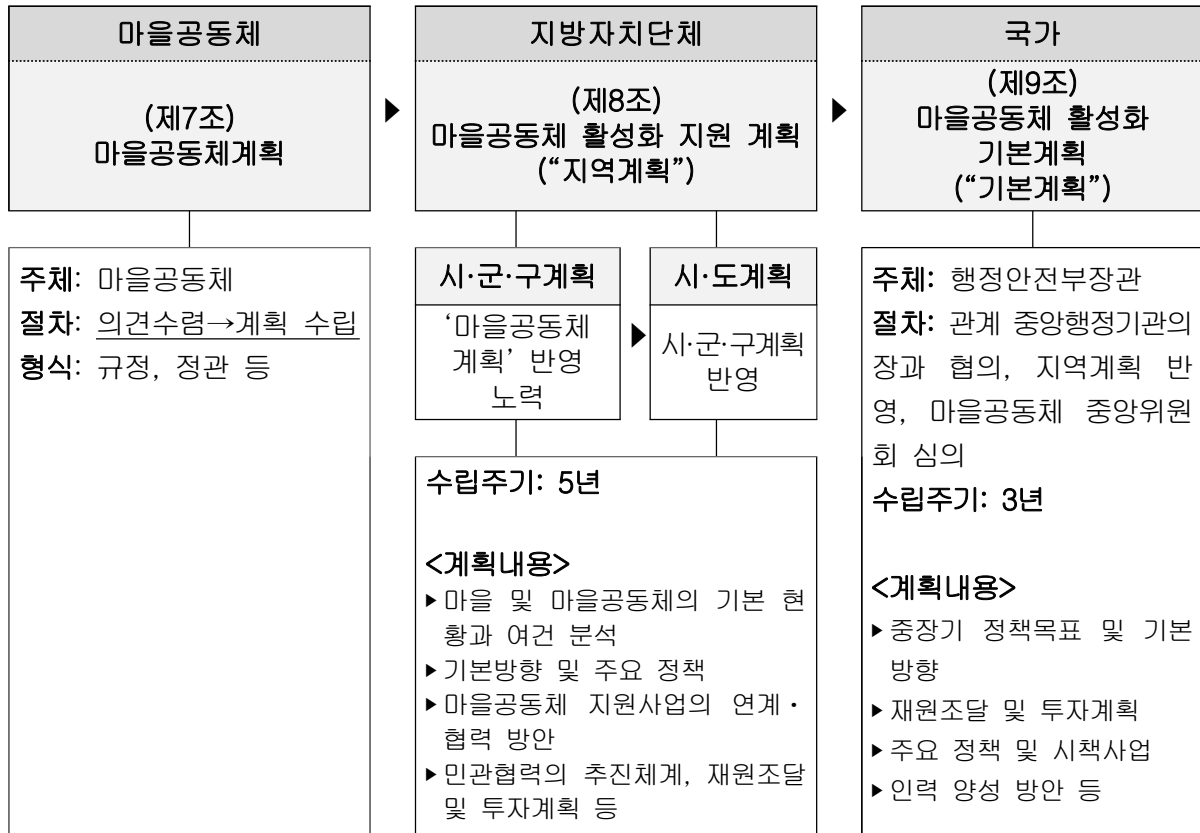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
5.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소관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절차]



(안 제7조) 마을공동체는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이나 정관 등으로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을공동체계획은 마을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공동체 내부의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만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마을공동체계획 → 지역계획(시·군·구계획 및 시·도계획) → 기본계획’의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개별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의 종류별로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역의 장기적 계획을 존중하여 전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다만, 마을공동체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근거 법률에 이미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수립시 개별법상 기본계획도 아울러 기초하도록 규정하여 법률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안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안 제10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안 제11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안 제12조)와 마을공동체 지원기관(안 제13조 및 제14조)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운영 5.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주민등과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정 안

1.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조정
3.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4. 제14조에 따른 중앙지원기관의 운영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와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제9조의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및 자문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지원정책의 연구 및 분석
3.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시행
4. 주민등, 공무원, 제18조의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마을공동체 활동의 인식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6. 마을공동체 간 연계·협력 및 협의회 설립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원기관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지원기관의 운영에 소

제 정 안

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지원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4. 전문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5.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 지역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 마을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구분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위원회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 설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 심의사항 ▶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 ▶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역지원기관의 운영 등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심의사항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조정 ▶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 중앙지원기관의 운영 등
	전담부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총괄·조정 ▶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개최	
지원센터 (안 제13조 및 제14조)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행업무 ▶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및 자문 ▶ 기초조사, 지원정책 연구 및 분석 ▶ 마을공동체계획 자문, 사업 지원·시행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인식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수행업무 ▶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성과관리·평가 지원 ▶ 조사·연구 및 분석 ▶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 수집·가공·제공 ▶ 지역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안 제10조)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활용을 규정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17)의 취지를 고려

17)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유사 위원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1조) 제정안에 따른 ‘중앙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¹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¹⁹⁾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²⁰⁾

유사 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²¹⁾으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하거나,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²²⁾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앙위원회의 설치에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대하여는 조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2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으며,²³⁾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면서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마을돌봄 사업을 위하여 이미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는 마을공동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지원국에 지역청년정책과(청년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와 기업협력지원과(마을기업 관련)를 두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가 ‘지역공동체과(13.3.~23.8.) → 지역활성화과(23.8~24.3.) → 지역청년정책과(24.3~)’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관심이 축소되고 것으로 보임.

기존부서가 전담부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조항은 「정부조직법」²⁴⁾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직제)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는 지역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수행 중이므로 기존의 정부 조직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과 중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주민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

24)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이하 생략)

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도 지역지원기관 및 중앙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마을공동체’로 하향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 유형인데 2020년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지정되었으므로 국가가 중앙지원기관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19년 말 해당 재단이 해산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원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앙지원기관에 관한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안 제15조),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16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안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18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① 마을공동체는 제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 추진 활동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을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8조의 지역계획 및 제9조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마을공동체 역량강화)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이 학습공동체로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정 안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력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19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안 제15조는 마을공동체에게 지역사회의 관심·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을 주체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을공동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 유형인데 2020년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이양사무로 지정되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²⁵⁾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으며,

제정안의 취지가 하향식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참여를 상향식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동체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마을공동체는 마을기업, 마을육아공동체, 농어촌마을 등 그 규모나 활동 내용, 유형 등이 상이한 조직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정·인증 등 지원 대상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 ~ 206. (생략)
207. 마을만들기
208. ~ (이하 생략)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청년 활동공간 구축 등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 조성
- (선정규모) 12개소
- (지원금)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차등지급 가능
-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 50% 이상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 지역 살아보기(체험), ▲ 일거리 실험, ▲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및 ▲ 주민교류 행사 등 운영

○ (공모 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절차) 서류심사에서 2~3배수(24~36개소) 선정하여 현지실사·발표심사
- (선정기준) 사업 실효성(60점), 지역지원의지(30점), 지역연계성(10점) 및 가산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 (60)		지역상생협력 (40)			
	구체성 (40)	체계성 (20)	지역지원의지 (30)		지역연계성 (10)	
			지자체 (15)	지역사회 (15)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지역자원 활용 (5)
가점	- 인구감소(관심) 지역 1 - 부처협업사업 1					

참고로, 마을기업 관련 제정안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지정·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 공모 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 중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안 제19조), 마을공동체기금(안 제20조부터 제23조) 및 민간기금(안 제24조), 마을공동체재단(안 제2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안 제26조)를 두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안 제27조)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1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마을공동체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마을공동체기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고향사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 정 안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마을공동체지역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의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
2. 제13조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과 제14조의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4. 제25조의 마을공동체재단에 대한 출연 및 운영 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6. 기금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 정 안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⑥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기금은 제2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이 관리·운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기금은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⑤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마을공동체재단)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마을공동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민간기금의 관리·운용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운영,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마을공동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재산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

제 정 안

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유희 또는 저활용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용·수익 또는 대부 신청인에 우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공유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공유재산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유희 또는 저활용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등의 현황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① 국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또는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9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사

회적기업 포털’²⁶⁾을 구축·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사업 공고 및 신청, 경영공시 등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²⁷⁾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을공동체기금과 마을공동체지역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마을공동체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고,²⁸⁾ 마을공동체지역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²⁹⁾

26)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2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③ (생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마을공동체기금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출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법률에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및 다른 기금과의 유사성·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마을공동체기금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을공동체기금에 관한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4조) 제정안은 마을공동체가 설립·운영하고 마을공동체재단이 관리·운용하는 민간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종 세제상 혜택 등을 두고 있는데,

민간기금의 조성·운영은 마을공동체나 주민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이 민간기금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서 2019년 1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하여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나

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므로 안 제24조제5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민간기금의 조성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 우려되므로 국가 지원에 관한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25조)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마을공동체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에 설립된 후 2020년에 해산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재설립함으로써 민간기금과 마을공동체 기부금품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므로 안 제25조제3항제2호의 삭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 제25조제3항 제1호를 ‘민간기금의 조성’에 관한 문구를 추가

30)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약 2.08억원(서울)에서 최소 3,000만원(세종)을,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1,375만원(인구 30만명 이상 시)에서 최소 550만원(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을 분담하였음.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마을공동체재단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임.

(안 제26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하는 경우, 계약방법과 사용료·대부료 감면, 우선순위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표로 국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하고 있어,³¹⁾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단체·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특례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³²⁾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32) 참고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존 입법례는 개별 법률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특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수익계약은 공익 목적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마을공동체는 사적 단체로서 수익계약 허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특례 관련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7조)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념일 지정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결정할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주관 부처가 정책적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제 정 안
제28조(자료제출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이 아닌 자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안 제28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29조) 제정안은 마을공동체 지원기관이나 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관과 지원센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사. 벌칙(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 정 안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30조) 제정안은 중앙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정안은 안 제5조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 규정 및 안 제29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정비와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50

참고 1

시·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연도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2	'22년 폐지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2년 폐지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부산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대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05	
광주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2021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0	'21년 폐지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2017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3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2019	
울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7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경기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2012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2021	

시·도	조례명	제정연도	비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4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2018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4년 폐지
충북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202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2011	'17년 폐지
충남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2012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16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7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	
	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1	14'년 폐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2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경북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8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경남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시·도	조례명	제정연도	비고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009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	2008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2017	

참고 2

시·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정의규정

시·도	내용
부산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대구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물 등의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5. "마을계획"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계획을 말한다. 6. <삭제 2021.6.4.> 7. <삭제 2021.6.4.> 8. <삭제 2021.6.4.>
광주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도	내용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단체 등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 나. 그 밖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교육·생활 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을 말한다.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시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울산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울산시 관내

시·도	내용
	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경기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삶터(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는 자,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공동체 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도	내용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 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충북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충남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경관,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 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 만들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 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시·도	내용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사회·문화·계층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중간 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전남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문화·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경북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함께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

시·도	내용
	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경남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특정한 마을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8.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참고 3

광역자치단체 마을공동체 관련 담당부서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사업)
1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마을기업),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마을돌봄),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2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 디지털경제실 중소기업지원과(마을기업),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통합 늘봄프로젝트, 나눔육아사업, 육아공동체) 및 아동청소년과(마을돌봄),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고령친화마을),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새뜰마을) 등
3	대구광역시	행정국 행정과(마을공동체), 경제국 민생경제과(마을기업),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우리마을 교육나눔),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새뜰마을) 등
4	인천광역시	행정국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 청년정책담당관(청년마을),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행복마을 가꿈사업),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마을, 마을기업) 등
5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 기후환경국 녹지정책과(생태문화마을),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등
6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마을기업), 교육정책전략국 청년정책과(청년마을),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농촌체험휴양마을) 등
7	울산광역시	행정국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마을기업),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공동육아나눔터) 등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마을공동체),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마을기업지원), 도농상생국 도농정책기획과(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다함께돌봄센터) 등
9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공동체지원과(마을공동체, 아이돌봄공동체, 행복마을 관리소), 사회혁신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마을기업),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시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마을정원),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어촌체험마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육아나눔터) 등

연번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사업)
10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소상공인과(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경제국 일자리청년과(청년마을), 기획조정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농정국 농정과(청년농촌보급자리, 농촌마을 만들기, 농촌 마을 영농공동체, 농촌체험휴양마을),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마을관리협동조합),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공동육아나눔터) 등
11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지역사회 활성화,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농정국 농업정책과(농촌체험휴양마을),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행복마을) 등
12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활성화), 청년정책관(청년마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마을기업),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새뜰마을), 농축산국 농촌재구조화과(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만들기),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마을 돌봄터),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13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청년마을, 청년공동체),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자원경영과(치유 마을 조성),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마을기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작은마을축제, 관광두레),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공동육아나눔터), 새만금해양수산물국 수산정책과(어촌체험휴양마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새뜰마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농산어촌공동체, 마을만들기) 등
14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청년마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으뜸마을),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어울림마을),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마을만들기, 마을공동급식), 해양수산물국 섬해양정책과(어촌체험휴양마을), 여성가족정책관(공동육아나눔터), 동부지역본부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경제과(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5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소규모마을 활성화, 이웃사촌마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청년마을),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마을기업),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문화특화마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물국 해양레저관광과(어촌체험휴양마을), 농축산유통국 농업대전환과(농촌돌봄마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외국인공동체), 저출생극복본부 아이돌봄과(공동육아나눔터) 등

연번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사업)
16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사회경제노동과(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청년마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어촌체험휴양마을,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농정국 농업정책과(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만들기),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마을돌봄, 다함께돌봄) 등
17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마을발전, 마을만들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마을기업),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마을공동체 미디어),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주민협업 마을공간개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마을어업, 마을어장), 농축산식품국 친환경축산정책과(마을공동목장),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육아나눔터) 등

※ 자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제공 정보를 바탕으로 재작성